

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최근 한강사업본부는 ‘건강한 한강’이라는 추진과제 아래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 혹은 야생동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여러 장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.

하지만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책임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어 관련 정책 제안 및 실현을 하는데 있어 제약과 혼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해 혼란을 막고자합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한강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내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인에게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의 권장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합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